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44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 조은희 · 서일준 · 박정하

신성범 · 김용태 · 이만희

서천호 • 주진우 • 김재섭

이성권 의원(10인)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의 불비로 인하여 사고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각종 준비와 지원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가족들이 사고에 관한 정보공유를 요청한 뒤에야 수습현황이 공항 전광판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야외 격납고에 설치한 임시 안치소에서 희생자 주검이 부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서야 시신 안치를 위한 냉동 컨테이너가 투입되는 등 미흡한 초기대처도 문제되었음. 또한 유가족에 대한 희생자 정보공유가 지연되며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우리나라는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하여, 2024년 ICAO 표준에 맞춘 '항공기사고 지원업무 표준 교안'이 마련되

었으나, 이번 제주항공 사고 당시에는 국토교통부가 2005년에 수립한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실정임.

이에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및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사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신속한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 및 유가족 소통 등을 위하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 원단을 구성하고 현장책임자를 임명함(안 제5조).
- 나.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피해자들의 추모 및 대기를 위한 공간 및 유해안치를 위한 설비 등 시설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연락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정보 제출 요청, 인원및 물자 제공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지원금 지금, 심리상담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및 법률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 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3장).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 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함(안 제5장).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고 수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를 통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를 말한다.
 - 2. "희생자"란 사고항공기에 탑승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나. 희생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

-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로서 「국제민간항공조 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기사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3조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항공기사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항공기사고의 수습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 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초기대응 등

- 제5조(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이 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현장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1. 승객 신원 및 현황 조사 및 보고
 - 2. 유가족 소통 및 정보공유
 - 3. 언론대응 및 브리핑
 - 4. 그 밖에 항공기사고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업무) ① 지원단은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 1. 항공기의 운영자, 제작자, 항공사 직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이하 "사고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탑승객 명단 등 항공기사고 관련 정보의 제출 요청
 - 2. 사고관계인에 대한 인원 및 물자 제공을 통한 현장 대응 협력 요청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고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피해자들의 추모 및 대기를 위한 공간 및 유해안치를 위한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 2. 피해자에 대한 연락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고 관련 정보를 공 유할 것
 - 3. 사고 대책 마련 및 브리핑 등의 회의에 피해자의 참석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할 것

-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 제8조(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① 현장책임자는 초기대응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공무원의 파견, 물건의 지원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고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한다.
-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현장책임자는 신속한 초기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사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 제1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

- 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항공기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 되는 비용
 -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 가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

- 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 하는 근로자가 항공기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인한 신체적·정신 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정한다.
- 제1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국가등은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20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21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2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